We Make Intangibles Tangibles



중국특허 현황 및 전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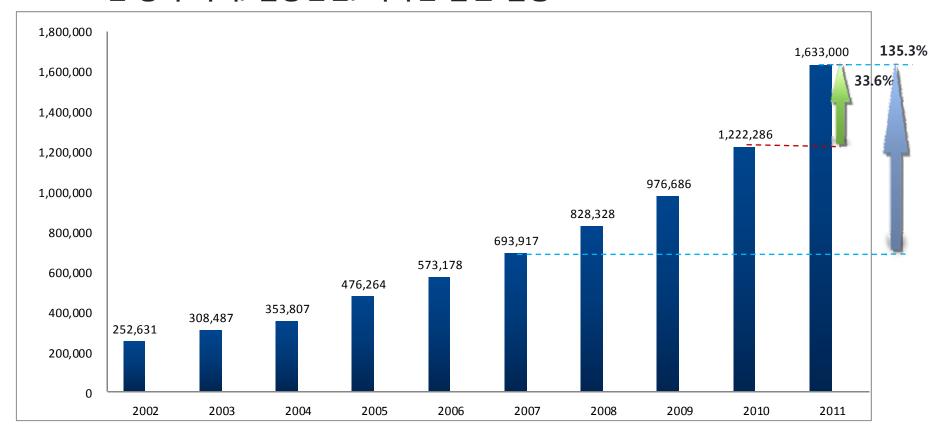
1. 중국에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는가?

-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가?
 - ✓ 아직까지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의 수준이 낮은 편
 - ✓ 그로 인해 저작권 뿐 아니라 특허권에 대한 무단 복제 경향 존재
 - ✓ 반면, 중국 내 자국기업 보호 경향으로 인해, 외국 기업이 특허권 행사 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존재

■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로, 소위 중국 특허 무용론 대두



■ 2011년 중국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출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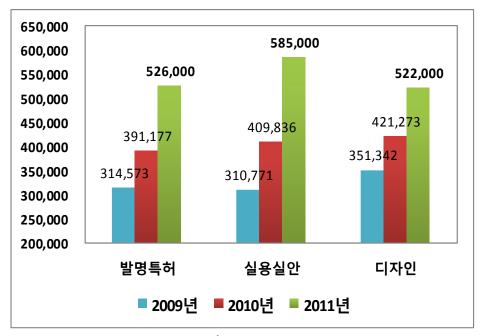


- ✓ 중국 출원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
- ✓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전년 대비 33.6%의 급격한 성장세
- ✓ 2007년 대비 135.3%에 높은 성장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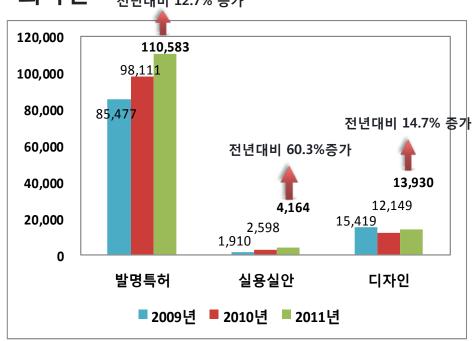


■ 2011년 중국 특허출원 현황

전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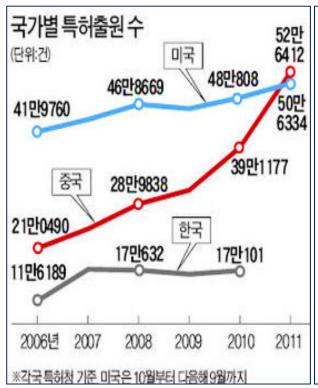
외국인 전년대비 12.7% 증가



- √ 특허보다 실용실안의 출원 수가 많은 것이 특징
- ✓ 외국인 특허 출원은 전체 특허 출원의 1/5의 해당
- √ 외국인은 특허 출원의 비중이 높으며, 최근 실용신안 출원의 급격한 성장세.



■ 2011년 중국 특허출원 현황



	주요 외국기 원 건수	업의 중국 (단위=개)			
순 위	기 업	건 수			
1	소니	2, 036			
2	파나소닉	1,723			
3	퀄컴	1,446			
4	삼성전자	1, 219			
5	샤프	1, 202			
6	GM	1, 110			
7	필립스	1, 104			
8	GE	1,022			
9	캐논	1,001			
10	도요타	935			
※ 자료=중국 국가지식산업국 자료 토대로 니혼게이자이신문 작성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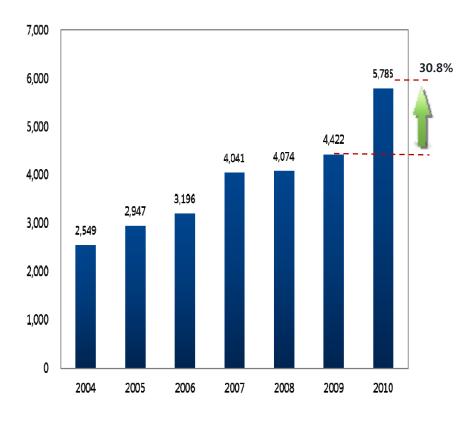
2010년 미국 특허출원 상위 **10**개 기업

순위	기업명(국가)	2010년 특허출원건수	
1	IBM(미국)	5,896	
2	삼성전자(한국)	4,551	
3	Microsoft(미국)	3,094	
4	Canon(일본)	2,552	
5	Panasonic(일본)	2,482 2,246	
6	Toshiba(일본)		
7 Sony Corp(일본)		2,150	
8 Intel(미국)		1,653	
9	LG전자(한국)	1,490	
10	HP(미국)	1,480	

- ✓ 전체 특허출원 수에서 2011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
- ✓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특허 출원 수는 증가세에 있음
- ✓ 반면 중국 특허 출원 상위 10위 외국 기업 중 한국 기업은 삼성 전자 뿐



■ 특허소송 1심 접수통계



특허 소송 급격한 증가세

■ 중국 특허침해소송 절차



- 중국특허침해소송은 각 지방의 인민법원이 관할함
- 지방중급인민법원이 1심 법원이며, 지방고 급법원이 2심 법원임
- 한국은 3심제이나, 중국 특허침해소송은 2
 심이 종심(終審)임
- 침해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1심이 8.8개
 월 2심이 3.9개월 정도임
- 침해소송의 시효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
 계인이 권리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당연히
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2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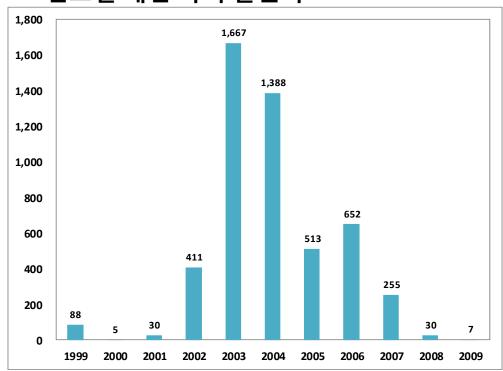
- ▶ CHINT사(중국)가 슈나이더(Schneider, 다국적기업)에 침해소송 제기
 - 중국 CHINT사 실용신안 제CN97248479호(고분단소형회로차단기)로 침해소송 제기
 - 1심(2006~2007년)에서 중국 지재권 침해 최대 손해배상 판정
 - 소송지: 저장 원저우 중급인민법원
 - 배상액 3.3억 위안(약 ₩ 550억원)
 - 2심(2007~2009년) 중 합의금액: 1.5억 위안(약 ₩250억원)
- ▶ 네오플랜(독일) 이 중대공업그룹유한공사(중국)에 대해 침해소송제기
 - 소송지: 북경시 중급인민법원
 - 배상액 2116만 위안(약 36억원)
- ▶ 홀리 커뮤니케이션(중국)이 삼성전자(한국)에 대해 침해소송제기
 - 소송지: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
 - 배상액 5천만 위안(약 96억원)



邱 则 有 (구칙유)

- 1962년생
- 1984년 요녕건축공정대학 졸
- 1984년~1995년 건축연구소 연구원
- 1995년~후난창사쥐싱건축재료회사 사장
- 후난성 인민대표 상무위원
- 중국 특허보호협회 부회장

■ 연도별 개인 특허 출원 수



- ✓ 120건의 특허소송 제기
- ✓ 특허유지비 매년 수백만 위안
- ✓ 로열티 매년 3,000만 위안



(2) 중국 특허소송현황

■ 중국 특허소송 관할 법원 및 전체 승패율 통계 산동 북경 4 12% 전체 승패율 11 60 90 32% 22% 33% 19 78 Russ 124 56% 15% 198 45% 38% 250 • 하얼빈 상해 47% Mongolia 우루무치 11 바오터우 • 10% 베이징 52 바하면국 광동 42 50% Korea 40% China 상하이 청두• 승소 12 28% 일부승 28 절강 무저유 65% 난당광저우 태평 패소 17 24% 53 76% ✓ 중국 특허소송 의 승률은 전부승소 15% 일부 승소 47%로 높은 편. ✓ 미국의 경우도 전부 및 일부승소를 합하여 60%대 ✓ 한국의 경우 침해금지가처분의 승률이 25%



■ 중국 지재권 상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반응

Q4. 知財問題の解決(改善)状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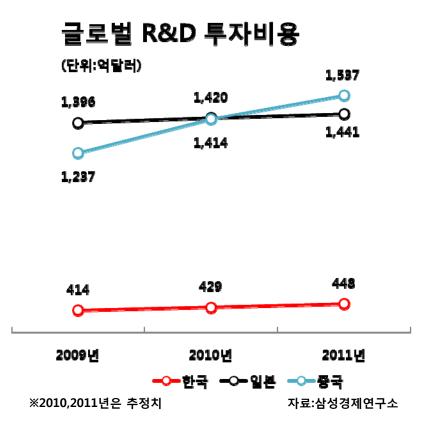
		Count	Percent			
ſ	a. 劇的に改善した(コマロマ 개선됐다)	1	1.5%	48.5%		
	b. 改善傾向にある(개선되고 있다)	31	47. 0%	10.070		
	c. 変化なし	25	37. 9%			
Γ	d. 悪化傾向にある (악화되고 있다)	8	12. 1%	12.60/		
L	e. 最悪の状態 (최악의 상태)	1	1.5%	13.6%		
	MISSING	0	0.0%			
	Total	66	100.0%			
	Total	66	100.0%			

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 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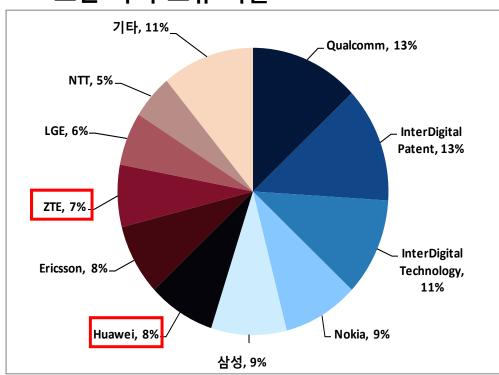
- ✓ 일본기업에 대한 중국 지재권문제의 개선 현황 질문
- ✓ 개선되고 있다는 비율 48.5%, 악화되고 있다는 비율 13.6%
- ✓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



3.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



LTE 표준 특허 보유 비율



- ✓ 2011년 기준 중국 R&D 투자비용 세계 2위(세계 1위 미국 3,958억 달러)
- ✓ LTE 표준 특허, 중국 업체 ZTE 7 %, Huawei 8% 보유
- ✓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 평균 2.5년(2010년 교육과학기술부, 국가별 기술수준평가결과)



4. 세계의 공장 중국

-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17% 창출
- 100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미국(16%)을 제치고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점유율 1위를 차지함.
- 200여개 제품에서 생산량 세계 1위
- 물건의 생산은 특허법 상 특허의 실시(사용)에 해당함
- 즉, 중국은 특허의 사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국가
- 이에 따라,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 및 타인이 나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임.

EXAMPLE) 'N' 중소기업

- 'N' 중소기업은 2010년 매출 약 200억을 달성
- R&D는 주로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, 주 생산 공장, 생산 직원 및 생산제품 수요 기업은 중국에 있음
- 즉, 특허의 기초가 되는 발명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나, 특허의 사용은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.
- 이에 따라 특허 분쟁은 중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음.
- 이러한 기업의 경우 한국 특허권보다 중국 특허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.



5. 정리

- 중국은 현재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, 즉 특허 생산 1위의 국가임.
-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, 제품의 생산, 즉 특허의 사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임.
- 즉, 가장 많은 특허가 등록되며, 가장 많은 특허의 사용이 있는 중국에서 특허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
 히 예상 가능함 . 현재도 특허 분쟁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음.
- 중국 특허 소송은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은 편임. 배상액도 낮지 않음.
- 중국에서도 특허 괴물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
- 중국이 자국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, 특허 소송에 있어서 수비적 입장에서 공격적 입장으로 변화는 과정에 있다고 보임.

결 론

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이유 즉, 공격적인 입장 뿐 아니라, 추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허 소송에서 방어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.



(1) 출원전략

이중출원 전략

- 이중 출원이란 하나의 발명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 시에 출원하는 것
-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인해 신속한 등록이 가능
- 먼저 등록되는 실용신안으로 권리행사 가능
- 추후 특허 등록시 실용신안 포기
- 권리의 공백기(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시까지 소요되는
 기간, 평균 2~3년)를 줄일 수 있음
- 해외 출원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번역요
 금은 1번만 소요됨.
- 중국의 실용신안권 무효율은 매우 낮음

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

- 특허는 물건, 물질 및 방법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
 반면, 실용신안은 물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
-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인 반면, 실용신안은 10년임
- 특허는 심사 후 권리를 부여하나, 실용신안은 권리를
 부여한 후 분쟁 발생 시 심사를 함
- 진보성과 관련하여, 특허는 '종래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'을 판단기준으로 하나, 실용신안은 '종래 발명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'을 그 요건으로 함.
- 권리의 내용(독점배타권)은 동일함. 즉, 실용신안권도
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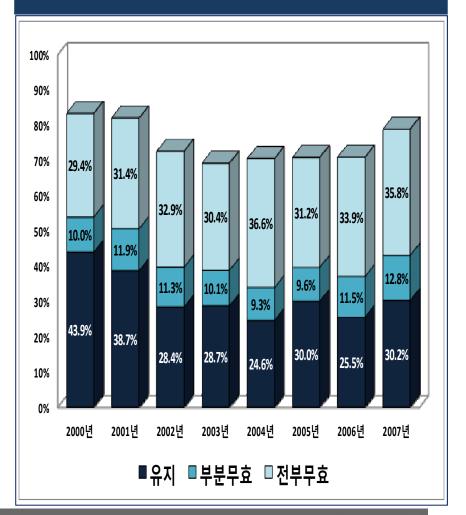


(1) 출원전략

실용신안 출원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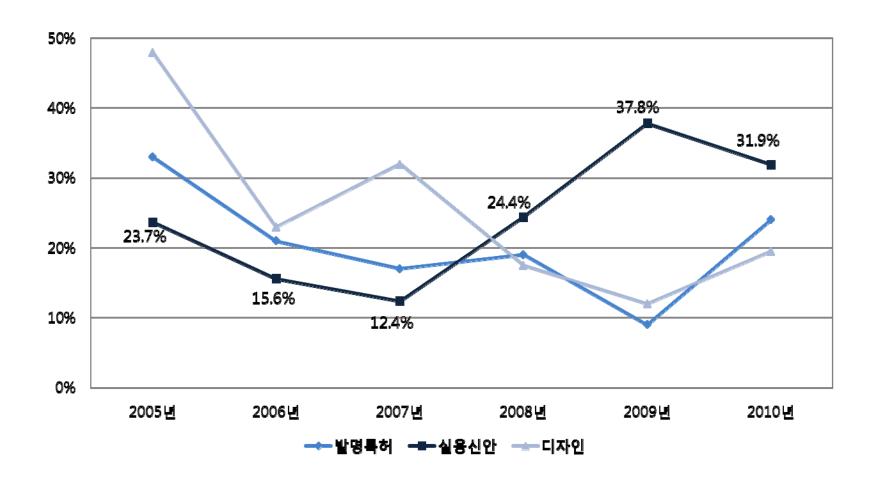
- 출원 비용이 저렴(보통 특허의 60~80%수준)
- 무심사로 인해 신속하게 등록가능(한국은 실용신안권에
 대한 무심사제도 폐지)
- 중국 실용신안권은 권리 행사 시 기술평가서 제출이 필수
 요건은 아님
- 기술평가서란?
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유효한 권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. 과거 한국의 경우, 실용신안권 행사 시 기술평가서를 요구하였음. 즉, 기술평가서를 받아야 하므로 추가 비용과시간이 소요되었음.
- 중국 실용신안권은 무효율이 높지 않음(한국 특허 무효율 은 대략 70%)

중국 실용신안권 무효율





(1) 출원전략



✓ 특허출원의 증가세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실용신안 출원은 증가세를 보임



- 법원 선택의 중요성
- 각 지방 법원마다 판결 성향이 상이함
- 북경, 상해는 원고 승소율이 높은 반면, 광동 지역은 원고 승소율이 매우 낮음.
- 북경은 특허 침해 소송의 전문성을 가진 재판관이 다수 있음.
- 상해는 외국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할 지역으로 재판관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없이 공평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
- 광동 지방은 중국 기업의 공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으로서, 광동에 위치한 중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임(지방보호주의)
- 즉,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, 북경 및 상해 법원이 유리하다고 판단됨
- 법원 선택의 방법
- 중국에서 소제기가 가능한 지역은, <u>침해 물품을 구입한 지역</u>, 침해 물품이 제조된 지역, 침해 물품이 판매된 지역 등임
- 따라서,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북경이나 상해에서 주문하여 구입 후, 북경이나 상해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- 최정 중국 변리사 한국 특허청 발표 자료 인용



7. 맺음말

- 특허 출원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
- 특허 출원은 자신의 발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
-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 출원하여 등록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

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



감사합니다.

